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5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5.

(3) 회 부 일 : 2024. 7.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확인 (열람·사본발급 등)할 수 있게 하는 사유로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	10. -----제11조의2 및

<u>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u> <u>검사와</u>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 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 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 19. (생 략) ④·⑤ (생 략)	<u>제77조의4에 따라 병무청장</u> <u>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u> <u>정검사, 병적 관리와</u>----- ----- ----- ----- ----- ----- ----- 11.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 「병역법」 제77조의4¹⁾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운동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람들의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가 될 때까지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 그런데, 운동선수·연예인 등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²⁾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병역면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사유로 현행법상 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

1)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2) “‘뇌전증 병역비리’ 의료계로 수사 확대…프로축구 선수, 배우도 연루”, 중앙일보, 2022.12.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863>)

역,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이 된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할 권한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병역법」의 개정을 전제로 함.

즉,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병역처분된 날로부터 3년)하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³⁾를 살펴 개정 논의에 반

3) 2024.7.25. 발의,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에서 대안 의결(원안 대비 변경 사항: 안 제77조의4제6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추가). 2024.10.14.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현행	개정안(대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 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

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1조의 입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본인을 통하지 않고 의료인 등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진료기록 제출 대상 환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도 진료기록 제출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제3항 제10호 중 “병역판정대상자”를 “병역판정대상자 및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 ----- -----. ⑧ -----제7항----- ----- -----.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정 수용)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추적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역법」 소관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병역법」 개정시 「의료법」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취지에 맞추어 병무청의 의견과 같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병무청(수정 수용)

- 병역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대상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현역·보충역대상자 등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의 장에게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반대)

- 의료법이 제3자의 환자 의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사적 영역 중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예외는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크고, 이러한 수단 외에는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행정적 편의주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영장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에 반대함.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게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혐의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수사기관은 필요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부합함.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신중검토)

-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이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병적을 계속하여 추적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로 비취질 우려가 있으므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신체검사 등이 진행될 때 더욱 엄격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확인하여 계속되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